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5회 임시회
2020. 9. 4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충청북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욱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0년 8월 26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8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도지사의 책무,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, 도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, 제4조, 제5조)

나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· 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함. (안 제6조, 제7조)

다.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8조)

라. 감염병 표본감시 관련 사항 및 역학조사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9조, 제10조)

마.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· 시행과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, 감염병 위기 시 추가 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1조, 제12조, 제13조)

바.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,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및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14조, 제15조, 제16조)

사.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감염병환자 등 및 격리자의 입원 · 격리 통지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17조, 제18조)

아.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방역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19조, 제20조)

자. 감염병의 예방 조치 및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21조, 제22조)

차. 방역관 · 역학조사관 · 검역위원을 두어 감염병의 예방, 방역, 역학조사 및 검역 사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23조)

카. 감염병 발생 감시, 예방 · 관리, 치료 및 역학조사 업무 등에 협조한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, 관계요원 및 그 밖의 기관 ·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입원 ·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24조)

타. 감염병 관리시설 사용 등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함. (안 제25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회)

가. 제출배경

○ 최근 신종바이러스 COVID-19 확진환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함에 따라, 정부는 8.30일부터 수도권 '사회적 거리두기'를 2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2.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.

※ 세계보건기구(WHO)는 3.11일 COVID-19 세계적 유행(Pandemic)단계 선언

○ 우리나라에서는 COVID-19외에도 사스(SARS), 신종플루(H1N1), 메르스(MERS)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었으며, 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발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임.

○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,

보건복지부에서는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*(시행 2020. 9. 5.)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였음.

* COVID-19 확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비 의약품·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,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권한 강화 및 역학조사관 규모 확대 등

또한, 서울, 경기 등 총 13개 광역시·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·시행 중에 있음.

○ COVID-19 등 감염병 발생을 통해 경험한 바,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임.

- 따라서, 국제 정세에 대응한 국가 책임의 예방·관리 체계의 수립·시행이 중요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현행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- 다만, 조례 제정을 통해 법령의 범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, 계획수립, 관련 조치 및 지원 등 도(道)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본 조례가 제출된 것으로 판단됨.

≪ 타 시·도 조례 운영현황 ≫

시·도	조례명	제·개정일
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020. 7.16.
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020. 7.15.
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018. 8.10.
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020. 7.14.
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	2020. 6. 1.
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	2020. 7. 3.
울산광역시	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020. 5.28.
세종특별시	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020. 7.15.
경 기 도	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020. 5.19.
강 원 도	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020. 5.15.
전라남도	전라남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	2020. 5.21.
경상북도	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020. 7. 9.
경상남도	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	2020. 5.14.

나. 주요 검토내용

○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조항으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를 따르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도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,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·방역대책,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보호 등의 사업(법 제4조 제2항)을 수행하고,

질병의 정보,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, 충청북도교육청, 의료기관, 의료단체와 공유하는 등의 도지사 책무를 규정함.

○ 안 제4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, 감염병 환자 치료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,

도지사의 행정명령 및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·관리,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규정함.

○ 안 제5조는 도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6조는 질병관리청장*이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. *질병관리본부장 → 질병관리청장으로 법령 개정(9.5 시행)

○ 안 제7조는 도지사가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규정함.

- 의료 관계기관·법인 및 단체 등이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8조는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(道)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지원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, 개발, 조사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함. 또한,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 소재 종합병원 또는 의과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구성, 권한, 예산의 지원 범위, 위탁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 마련이 요구됨.

○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한 필요한 자료와 감염병의 예방·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10조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11조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라 도지사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12조, 제13조는 도지사가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관련 진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. 또한 감염병 위기 시에는 도지사가 감염병 관리기관의 추가 지정과 격리소·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14조는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,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입소를 거부할 없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15조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관계법령에 따라 평가 항목·방법, 결과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을 마련이 요구됨.

○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17조는 감염병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·운송수단·장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고, 감염병환자 등은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18조는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 또는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토록 규정함.

- 대상자 및 보호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○ 안 제19조는 도지사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법 4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20조는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해 도지사는 해당 시장·군수에게 소독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23조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을 도 소속 공무원으로 2명이상 두되, 그 중 1명은 의사로 임명하며,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검역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역학조사관에 임명할 도 소속 의료인(의사) 확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.

○ 안 제24조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, 예방 · 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한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그 밖의 기관 ·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또한,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 · 의료업자 · 의료관계요원 등을 동원한 경우, 해당 의료인 또는 그 의료 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수당 · 치료비 또는 조제료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감염병 관련 경비는 국가, 도, 시·군 부담(보조) 및 본인(외국인 포함)으로부터 징수할 있는 경비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25조는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·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,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 ·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, 감염병 환자·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를 거쳐 손실보상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28조는 감염병 예방,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, 충청북도교육청,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29조는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함

-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감염병 업무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권한, 도민의 권리와 의무, 대응체계 구축, 실태조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, 컨트롤 타워(Control-Tower)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근거를 마련하여,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는 물론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됨.

○ 또한,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에 위배는 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,

본 조례안의 제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.